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유진투자선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절차등의 설명) 회사는 고객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장외거래에 따른 제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위험의 인지)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제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이 신규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단위당 미화 5,000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증거금 미달에 대한 처리) 회사는 고객의 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위탁증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미화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책임 및 의무의 한계) 장외시장의 상황에 따라 고객의 주문전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일중거래관련 위험고지) 회사는 일중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 약관을 따른다.

<별첨 >

1. 제6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유사해외통화선물의 경우 위탁수수료는 없으나 스프레드 비용이 발생한다.

2. 기타 특약사항